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102433(본소), 2021가단5295830(반소) 판결
[구상금 · 가불금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정지홍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웁빈
담당변호사 강호균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765,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2.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66,92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3,529,719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등

(1)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 Ⅱ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준용되는 보통약관(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C은 2020. 10. 7. 13: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회사 차고지에서 나와 순천 방면 편도 2차로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시속 약 13~15km로 2차로를 진입하고 있었고, F는 위 일시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벌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시속 약 158.8km~166.7km로 위 국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진입하던 순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약 122m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2)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바로 1차로 쪽으로 가면서 1, 2차로에 걸쳐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급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146.2km~153.7km로 2차로로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2차로로 추월, 진행하려 하였다.

(3) 그 순간 피고 차량이 다시 2차로 쪽으로 진입하자 원고 차량 앞부분과 피고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 옹벽에 부딪치면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배수로에 빠졌고, F는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선처리사로서 2020. 10. 27. 이 사건 사고로 F가 사망함으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F의 유족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333,824,310원(= 합의금 333,194,690원 + 치료비 639,6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 11. 25.까지 166,913,15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에서 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166,921,160원(= 333,824,310원 -

166,913,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데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원고 차량의 과실 90%)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에게 위 환입액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부담부분을 공제한 133,529,719원(= 166,913,150원 - 333,824,31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원, 피고 차량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

살피건대, 관련법령,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이 점에서 원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 차량의 경우

(1) 차량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피고 차량이 위 국도에 진입하여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다가 진입을 마치지 아니하고 1, 2차로의 경계 차선을 물고 진행한 행위는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잘못은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에게 피고 차량이 1차로 진입을 마칠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19조 제3항),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38조 제1항), 후행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1차로 진입을 마치지

아니하고 우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복귀한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 차량의 진로를 예고 없이 방해한 것이다.

(나) 원고 차량의 경우

(1)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 등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바(같은 법 제17조 제3항), 원고 차량이 제한시속 80km인 위 국도를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 자체를 회피할 수 없게 한 중대한 잘못이다.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바(같은 법 제48조 제1항), 피고 차량이 저속으로 위 국도 2차로에 이어 1차로에까지 진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급감속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급감속 조치를 취하였다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상 충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1차로 진입을 마칠 것으로 경신하고 여전히 제한속도를 6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려 하였다.

(2) 부당이득 반환채무

원고는 선처리사로서 2020. 10. 27. 이 사건 사고로 F가 사망함으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F의 유족에게 333,824,31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 : 30인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부분은 100,147,293원(= 원고의 지급액 333,824,310원 × 피고 차량 과실 30%)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1. 25.까지 피고의 부담부분 보다 많은 166,913,150원을 환입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 66,765,857원(= 166,913,150원 - 100,147,293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6,765,8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환입일 다음날인 2020. 11. 2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